

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

- 농림수산부 -

I. 농수산물 유통여건과 문제점

1. 농수산물 유통여건의 변화

○ 국민소득수준 향상 : 신선채소, 쇠고기 등 고급식품 선호에 따른 신선도 유지와 위생적인 처리 등을 통한 상품성 제고 필요

○ 도시인구 급증 : 농수산물 유통물량 증가로 인한 도매시장 등 대량유통시설의 중요성 증대

○ 농업구조조정 : 농업생산의 전업화, 규모화 및 주산단지화로 주요품목별 전문유통체제 구축

○ UR협상타결 : 가격보조정책의 축소 불가피로 유통부문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농어가의 실질소득 제고

○ 지방화시대 개막 : 지방자치단체 및 농·수·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지역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역할 증대

2. 농수산물 유통의 문제점

〈유통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〉

-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유통마진이 높다.

-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

- 중간상인이 가격을 조작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.

○ 생산자단체의 산지 유통기능이 미흡하여 상인이 산지유통 주도

○ 공영도매시장 건설 부진과 상장경매 등 공정거래가 정착되지 않아 거래질서 문란

○ 점포임대료, 생계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소매단계 유통마진 과다발생

○ 농수산물 생산은 계절과 기상여건에 크게 좌우되므로 수급과 가격안정에 한계

○ 품질속이기와 가격조작 등 부정유통행위 상존

II. 개선대책

〈기본방향〉

○ 유통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으로 유통의 원활화와 공정한 가격형성

○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역할분담으로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

〈추진과제〉

-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유통기능 강화
- 공영도매시장 건설확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
-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 확대
-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 강화
- 부정유통행위 근절과 제도개선
- 산지유통
 - 생산자단체 주도의 공동출하 확대로 시장대응력 제고
 - 도매시장
 - 공영도매시장 확대건설로 대량·신속유통과 공정거래 정착
 - 소매단계

- 집배센터와 직판장을 통한 직거래 확대로 민간유통기능 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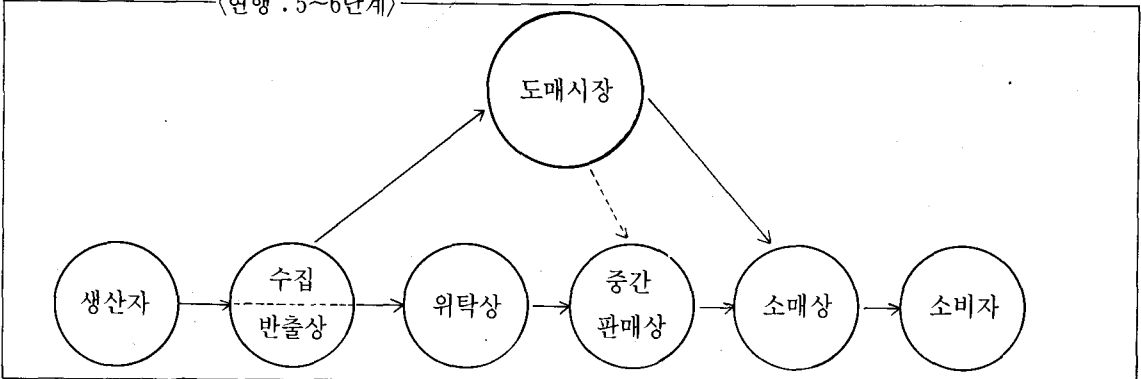
1.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유통기능 혁신

〈현황과 문제점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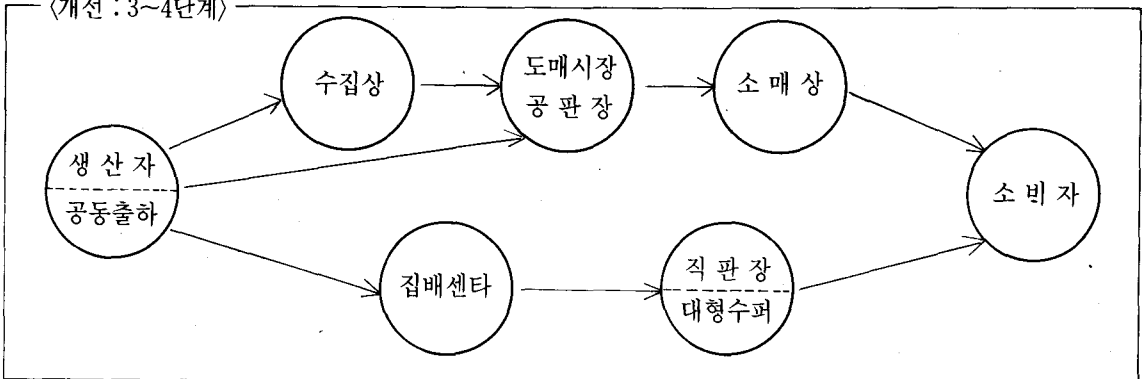
- 산지 유통시설이 부족하여 선별, 포장, 가공, 저장기능 미흡
 - 농어민의 공동출하 부진으로 생산자의 시장대응력 취약
 - 무, 배추 등의 발매기거래 성행(고냉지채소 90%, 양파 40%)

〈개선목표〉

〈현행 : 5~6단계〉



〈개선 : 3~4단계〉



가. 농어민의 공동생산·공동출하능력 배양

- 공동출하조직 육성
 - 주산단지의 작목반과 협동출하반을 통합하여 공동생산·공동출하조직으로 육성
 - 출하조절자금 등 각종 지원자금을 공동출하촉진자금으로 통합
- ▷ 공동출하가 활성화되고 규모가 큰 공동출하조직을 품목별 전문조합으로 육성
- 공동출하확대 : ('90)20→('96)40%

나. 산지유통시설 확충

- 단위농협 중심으로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설치
 - 집하, 세척, 선별, 포장, 가공, 저장 등을 위한 종합시설·주요 주산단지에 2001년까지 343개소 건설
- 산지 집하장 설치확대로 산지경매 활성화
 - 산지 경매 확대실시로 농어민 수취가격 제고

다.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

- 유통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농협조직 강화
 - 영세단위농협(658개)의 통합합으로 산지유통기능 강화
 - 단위농협의 유통전담 상무제를 '96년까지 전단협으로 확대
- 농협의 판매사업 확대로 산지 발매기상인 견제
 - 농협의 고농지채소사업소 설치('91.5.17)
- 농협이 유통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진기금 확대
 - ('91)100→('96)600억원
- ▷ 장기적으로는 농협의 공동출하 확대로 발매기 거래를 점진적으로 축소

라. 규격포장거래 확대실시

- 규격포장품에 대한 도매시장에서의 우대조치 및 비규격포장품에 대한 제재
 - 규격포장품에 대한 상장수수료 인하 및 경매

우선순위 부여

- 규격화가 정착된 과실류를 중심으로 비규격포장품은 거래를 제한
- “얼굴있는 농수산물”공급으로 규격화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
 - 생산자단체의 품질자율검사 및 조합명, 생산자명 표시추진
 - 지역특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품질보증서 첨부 권장
- 규격포장화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
 - 표준거래규격의 확대제정('93년까지 완료) ('91)35→('93)105개품목
 - 규격포장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포장자재비 지원 확대

2. 공영도매시장 건설확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

<현황과 문제점>

- 공영도매시장 건설지연으로 유사도매시장 거래성행
 - 공영도매시장이 가락동 등 6개소에 불과
 - 공영도매시장 건설부지 확보애로
-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상장경매 미정착

가. 공영도매시장 건설확대

- 대도시 공영도매시장 조기 건설(6개소 개설 운영)
 - '93년까지 완공 : 7개소(인천, 수원, 부산, 전주, 서울동북, 춘천, 창원)
 - '93년 이후 추진 : 6개소(부산동부, 서울서남 등)
- ※ 공영도매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확대 필요
- 중소도시에 대한 공영도매시장 건설 추진
 - '92년 이후 추진 : 천안, 안양, 안산, 충주 등

○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화훼공판장 조기 개설로 꽃의 상장경매 거래유도

- 공영도매시장 건설부지 확보방안
 - 공영개발지구내 도매시장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원칙
 - 서울동북권 도매시장은 국무총리실 조정으로 소요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'93년까지 완공토록 추진

• 부지는 서울시가, 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생산자단체 등이 담당

- 불공정거래 요소의 과감한 제거
 - 상승적인 개별위탁거래 중매인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
 - 전광판 또는 게시판 설치 운영으로 거래내용의 공개

나. 도매시장 운영개선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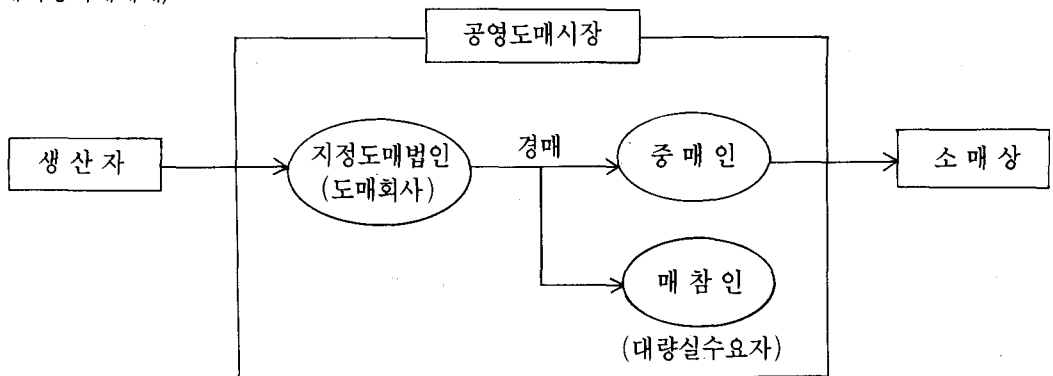
- 상장경매제도의 확대추진
 - 과일류, 포장채소류 등은 '91.7월부터 상장경매 전면 실시
 - 무·배추 등은 경매장 확보와 규격화 등 여건 조성후 실시
- 공정거래 여건조성
 - 공영도매시장 중매인에 대한 소득표준을 인하와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과세강화로 공영도매시장 기능 활성화
 - 지정도매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적평가로 시설사용면적 조정
 - 생산자단체 등의 서울서남권 도매시장 건설운영

3. 소비지 직거래 확충

〈현황과 문제점〉

- 산지와 소비지와의 직거래 연계체제 미흡
- 생산자단체 등의 직판시설 부족으로 민간유통선도기능 미흡
- 농수산물 집배센터 건설확대
 - 설치계획: ('91)1→('93)6→('96)15개소
- 생산자단체 등의 직판장 건설
 - 직판장 설치계획('90)162→('93)300→('96)400개소
-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시범소매점포 지정운영 확대
 - 지정소매점: ('91)250→('93)600→('96)1,000개소
- 지방도시 주말 농어민시장 개설운영

〈도매시장거래체계〉



- 농어민과 도시민의 직거래 장소로 활용
- 금년 9월중 서울 목동에 농산물직판시장 개설 운영
- 생산자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간의 직거래체제 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

4. 수급 및 가격안정

(현황과 문제점)

- 농업관측 및 유통예고 등 생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품목의 과잉·과소생산 반복
- 수매비축과 출하조절 등 다각적인 가격안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특성상 가격안정 미흡
- 생산자단체의 저장·가공기능이 취약하여 성출하시 가격안정 미흡

가. 품목별 특성에 따른 생산 및 수급안정장치 강구

- 저장성은 있으나 수급이 불안정한 양념류 등은 생산출하조정약정제를 확대 실시
- 저장성이 낮은 무, 배추 등의 채소류는 가공 및 출하조절사업 확대

나.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 기능 강화

-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단위 농수산물 수급안정 계획 수립 실시
 - 지역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
 - 지방자치단체의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「도 유통과」 및 「군 유통계」를 신설
-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조성으로 가격안정기능 강화
 - 생산자단체의 특성에 따라 자조금을 조성 운용

다.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확대조성으로 수급조절

- 농안기금 규모확대 : ('91)6,113억원→('94)1조 원

라. 생산자단체의 저장·가공기능 확충

- 저장 및 단순가공을 위한 시설확충 ('91)53→('93)150→('96)380개소
- “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”을 제정하여 가공산업 육성

5. 부정유통행위 근절 및 제도개선

가. 육류 유통

(현황과 문제점)

- 영세도축장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도축 부조리 발생
- 도매시장과 도축장의 미분리로 도시공해 유발
- 수입쇠고기의 한우 등갑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
- 산지에 부분육 가공공장 설치로 생육유통에서 부분육 유통체제로 전환
 - 부분육 가공공장 : ('93)2→('96)5개소
 - 쇠고기 부분육 유통량 : ('93)10→('96)40%
- 현대식 도축, 가공, 판매시설을 갖춘 도축장의 신규허가로 도축업계의 경쟁 촉진
- 지육전용 도매시장건설로 도축장과 도매시장을 분리하여 도시공해문제 해소 : ('93)3→('96)9개소
- 축산물도체등급제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등급사 양성(50명)
- 축산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소비자 유통시설 확충
 - 축산물 종합판매장 확대설치 : ('91)40→('93)100→('96)150개소

부위별 판매로 일반정육점의 공정거래 유도 및 소비자 교육기능 수행

-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확대설치
(’91)3,200→(’93)4,000→(’96)5,000개소

6. 유통통계조사 및 유통정보의 내실화

〈현황과 문제점〉

○농수산물 규격화 미흡 등으로 유통정보의 신뢰성 저하

○기본적인 유통통계가 없어 유통정책수립에 애로

○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, 분석, 분석체계 미비

○유통통계조사의 공식통계화

-단계별 유통비용, 유통량 등 기본통계를 생산하여 유통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(’92년부터 시험조사)

-주요 도매시장에 전담조사원의 고정배치로 정확한 통계 조사

○유통정보의 효율적 운용

-’92년부터 시장별 가격과 거래량 등 정보내용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분석하여 제공

-단위조합 중심으로 지역유통정보의 수집 및 분석체계 확립

-유통정보의 종합조정 및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과 설치

-음성정보시스템 및 TV, 신문 등을 통한 분석 방법 다양화

7. 유통전문인력 육성과 교육·홍보 강화

〈현황과 문제점〉

○생산자단체의 유통 전문인력 부족

○소비자의 품질 식별능력 부족으로 불공정거래

상존

○유통관련 종사자의 공정거래 의식 결여

○생산자단체의 유통전문인력 육성

-단위조합별 유통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유통교육 확대 실시

○소비자 보호를 위한 홍보강화

-대도시에서 “농수산물 잔치”를 개최하여 소비자에 대한 농수산물 품질 식별교육장으로 활용

-여성단체 등을 통한 농수산물유통의 특성과 유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

○유통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 및 사기진작

-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실시로 유통전문인력 육성과 공정거래유도

-선진국의 유통분야 시찰교육실시 확대로 유통개선 인식제고

Ⅲ. 향후 추진계획

가. 세부시행계획 수립

○개선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,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

나. 유통개선대책회의 설치

○장관주재 유통개선대책회의를 설치하여 기관별 대책추진 상황을 점검확인

다. 생산자단체 등에 유통개선대책본부 설치

○농·수·축협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부회장(부사장)을 본부장으로 하는 유통구조개선대책본부를 설치운영

라. 홍보강화

○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에 대한 홍보강화
-생산자, 생산자단체, 유통인,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유도

- 국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수급과 가격안정 기여
-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유통교육 강화

800)

2. 부문별 투자계획('92~'96)

(단위 : 억원)

IV. 투자계획

1. 장기투자계획(92~2001)

- '92~2001 : 54,700억원(국고 38,500, 기타 16,200)
- '92~96 : 23,700억원(국고 17,300, 기타 6,400)
- '97~2001 : 31,000억원(국고 21,200, 기타 9,800)

유 별	지 원 별	계	국 고	지방비	기 타
농 산 물		15,000	11,700	3,300	—
축 산 물		3,000	—	—	3,000
수 산 물		1,100	1,000	100	—
가공등 기타		4,600	4,600	—	—
계		23,700	17,300	3,400	3,000

어떻게 하면 유해물질의 잔류를 막을 수 있나?

- ◆ 가축이 먹는 사료와 물은 오염이 되지 않았나 주의깊게 관찰하여 오염되지 않은 사료와 물을 급여하고
- ◆ 동물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용 10대수칙을 꼭 지켜야 하며
- ◆ 특히 질병을 치료할 때 약품의 선택은 전문 수의사와 상의하여 사용한다.
- ◆ 다 자란 가축은 휴약기간을 충분히 지킨 후 출하를 하시되 출하전 일정기간은 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후기배합사료를 먹어야 한다.

동물약품 안전사용 10수칙

1.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한다.
2.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에만 사용한다.
3. 사용 용량을 반드시 지킨다.
4.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한다.
5. 사용방법(투약경로)을 반드시 지킨다.
6.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사용을 하지 않는다.
7.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한다.
8. 휴약기간이 되면 사료통, 축사,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먹인다.
9. 동물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 유지한다.
이 기록은 시장출하와 치료시에도 필요하다.
10.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인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도움을 청한다.